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종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54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7.

발 의 자 : 이종욱 · 박성민 · 우재준
주진우 · 김은혜 · 김 건
조승환 · 한지아 · 송언석
배준영 · 안상훈 · 안철수
박정훈 · 김상훈 · 김희정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폭발물 설치나 흉기 테러 등을 예고하는 방식의 공중 협박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에는 단순한 ‘명의 도용’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, 사문서위조나 사기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성립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.

한편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으나 이 경우에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중협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이른바 ‘명의도용 공중협박’이라는 신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16조의

2).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 및 제2항”을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”로 한다.

- ② 타인의 성명을 사칭하거나 타인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본인을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6조의2(공중협박) ①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</p>	<p>제116조의2(공중협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타인의 성명을 사칭하거나 타인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본인을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u></p> <p>③ -----<u>제1항 및 제2항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<u>제1항부터 제3항까지</u>----- -----.</p>